

이화여자대학교 제18대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정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제18대 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총장후보를 선정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총장후보의 자격) ① 총장후보는 이학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고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학문적 깊이와 지도력, 행정능력 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총장후보는 교내인사와 교외인사를 불문하며, 등록공고일 현재 교원정년(만 65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총장후보로 입후보하려면 입후보등록개시일 전 3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교무위원
2. 교수평의회 의장·부의장
3. 총장직속기관장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총장후보 추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라 한다)를 두고, 관련 업무는 교무처가 담당한다.

② 관리위는 교무처장, 교수평의회가 추천하는 교수 대표 3명, 직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 대표 2명, 총학생회와 대학원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대표 각 1명,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동창 대표 2명,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법인 직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③ 법인 이사장은 전항의 각 단체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후 14일 이내에 각 단체의 추천이 없으면, 법인 이사장은 각 단체의 소속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리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관리위 위원은 총장후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한다)로 등록하거나 입후보자의 추천인이 될 수 없다.

⑥ 관리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장후보 선정 투표 및 개표 등 선거의 관리·감독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업무 및 입후보 자격에 관한 심의
3.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 총장후보의 선정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 및 부정 사례의 접수 및 조사 업무
4. 소견발표 및 정책토론회에 관한 업무
5. 기타 총장후보 추천 절차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

⑦ 관리위 업무 수행에 관하여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법인 직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공고) 관리위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5 조 (총장후보 입후보자의 등록) ① 입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용 후 2년이 경과한 본교 전임교원 20명 이상 25명 미만의 기명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해당 입후보자가 소속한 단과대학(원)의 추천인은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② 추천인은 1명의 입후보자만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입후보자의 등록은 관리위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입후보자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4 용지 2장 이내의 입후보자 소개서(학력, 경력, 상벌사항 등 포함)
2. A4 용지 6장 이내의 학교 발전에 대한 소견
3. 추천인(20명 이상 25명 미만)의 서명이 담긴 소정 서식의 추천서
4. 최근 10년간 연구업적목록
5. 범죄경력조회서(수사 중인 사건 포함)

④ 관리위는 입후보자가 제2조의 자격과 본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후보 등록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연구업적을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송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심사하게 하고, 그 회신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회신 결과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⑥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관리위가 입후보자의 업적 내용을 송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관리위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 (선거권자) ① 총장후보는 선거권자 명부 작성일 현재 본교 전임교원, 직원, 학생 및 동창의 선거로 선정한다. 다만 동창의 선거방식은 총동창회에 위임한다.

② 각 선거권자의 선거권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휴직 중인 자 제외) 100(77.5%)
2. 본교 사무직원인사규정 제3조의 적용 대상인 직원(휴직 중인 자 제외) 15.5(12%)
3. 학부생(휴학생은 제외) 및 대학원생(일반·전문·특수대학원 포함, 휴학생 제외) 11(8.5%)
4. 동창 2.6(2%)

제 7 조 (선거일 및 선거공고) ① 관리위는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공고일 후 15일부터 40일까지 총장후보 선정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② 관리위는 선거 일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거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소견발표 및 정책토론회) ① 관리위는 입후보자들의 소견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실시하며, 그 방법·시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② 소견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누구든지 특정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입후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해 인정한다.

1. 공용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

2. 공용 벽보를 통한 선거운동

②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는 금전·물품·향응 등의 제공, 개별방문, 집단적 서명, 집단적 시위 및 모의 투표를 할 수 없다.

③ 각종의 정보통신망수단을 이용한 선전 및 비방, 청탁, 강요, 설득은 물론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다.

④ 관리위는 위 사항들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된 입후보자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0 조 (총장후보 선정 방법) ① 총장후보는 선거권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정하며, 기표방법은 단기명 투표로 한다. 다만 자연재해 및 재난 등의 사유로 현장 투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식 투표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전자식 투표 관련 세부사항은 관리위에서 정한다.

② 관리위는 제1항의 투표 결과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으로 1위와 2위 득표자를 총장후보로 선정하며, 선정된 총장후보는 순위를 표시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다. 다만 2위 득표자가 동점자일 경우 동점자 모두를 총장후보로 선정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다.

③ 1차 투표는 1일의 현장사전투표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④ 1차 투표에서 1위 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1차 투표일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1위와 2위 득표자(2위 득표자가 동점자일 경우 동점자 모두를 2위 득표자로 본다)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항에 따른 방식으로 총장후보를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2차 투표에서도 유효투표자의 과반수에 이르는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 모두를 총장후보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총장후보로 선정하며, 선정된 총장후보는 순위 표시 없이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다.

⑥ 관리위는 투표 결과를 개표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직무 독립성과 비밀준수의무) 관리위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총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취득한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관리
위의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부칙(2024. 7. 16. 제정)

이 규정은 202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